

조 례 안 예 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3 - 108호

창원시 공영장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공영장레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창원시의회의장 김 이 근

1. 자치법규명

「창원시 공영장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를 알 수 없는 자 또는 저소득층 등에 대한 공영장레 지원 및 유품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영장레 지원 시 유품 정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정비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제3호 ~ 제4호)

다. 공영장레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4조제2항제3호)

라. 지원대상에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제3호)

마. 지원내용에 유품 정리를 위한 비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6조제1항제4호)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8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전화:055-225-5376, FAX:055-225-4743)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jemhwa@korea.kr), 직접 방문 등

창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명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10
----------	-----

발의연월일 : 2023. 10. 13.

발 의 의 원 : 서명일 · 구점득 · 김상현 · 문순규 · 박강우
박선애 · 서영권 · 이종화 · 전홍표 · 정길상
진형익 의원(11명)

찬 성 의 원 : 김영록 의원(1명)

1. 제안이유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장례지원 및 유품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연고자 등의 유품 정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제3호 ~ 제5호)

나.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4조제2항제3호)

다. 지원대상에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제3호)

라. 지원내용에 유품 정리를 위한 비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6조제1항제4호)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나. 관계 법령

다. 현행 조례

창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가족해체”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가족해체”로 한다.

제2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4. “유품정리”란 제5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의 사망으로 남겨진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1항 후단 중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그 반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를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기본방향”을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3.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제5조제2호 중 “단절,”을 “단절 및”으로,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없”을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저소득층 사망자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제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유품 정리를 위한 비용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u>장사 등에 관한 법률</u>」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u>가족해체</u>-----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제2조(정의) ----- -----.</p>
<p>1. 2. (생 략) <u><신 설></u></p> <p><u><신 설></u></p>	<p>1. 2. (현행과 같음) 3. “저소득층”이란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4. “유품정리”란 제5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의 사망으로 남겨진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p>
<p>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창원시 공영장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에 따른 창원시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p>	<p>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 ----- ----- ----- ----- 포 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p>

우 그 반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영장례의 기본방향

2. 공영장례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3. (생략)

<신설>

4. 공영장례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6. (생략)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사망 당시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략)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신설>

② -----
-----.

1. -----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삭제>

2. (현행 제3호와 같음)

3.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삭제>

4.·5.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제5조(지원대상) -----

-----.

1. (현행과 같음)

2. ----- 단절 및 -----
----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

3. 저소득층 사망자의 연고자가

3. (생략)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신설>

② ~ ④ (생략)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6조(지원내용)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유품 정리를 위한 비용

② ~ ④ (현행과 같음)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등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의2(유류금품의 처분) 시장등은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사망자가 유류(遺留)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은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 창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5조의 지원대상이 사망하는 경우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창원시 공영장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에 따른 창원시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그 반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영장례의 기본방향
2. 공영장례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3. 공설장례식장 및 사설장례식장에 공영장례를 위한 빈소 확보 방안
4. 공영장례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공영장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사망 당시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
2.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사용료
3.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 등을 지원받은 경우 제4항의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제7조(업무위탁)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위탁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그 밖의 관계인 등은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조사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